

제 6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6.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는 것
- 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 6.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제 8 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을 적용하는 한도에서 그 기술규격, 또는
 - 나. 제 5 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 6.3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그 협정의 제 2 조부터 제 9 조까지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4 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4 조 및 제 5.4 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 조와 제 5 조 및 부속서 3 의 의미 내에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 년 11 월 13 일 채택한 협정 제 2 조, 제 5 조 및 부속서 3 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G/TBT/1/Rev13 의 제 1 부에 대한 부속서 2)과 그 이후 개정판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3. 양 당사국은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제표준화 기구에 대한 참여의 맥락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각각 자국의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 6.5 조 기술 규정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 규정이 자국의 기술 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를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 규정을 자국의 기술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 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3. 각 당사국은 제 1 항에 언급된 기술 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 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제 6.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서로의 영역의 인정기관 간 협력 약정의 인정 촉진
 - 나. 특정 기술 규정에 대해서 서로의 영역에 소재하는 정부 지정 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다. 인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지역적,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인정 협정과 약정의 인정

라.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에 대한 인정

마.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에 대한 인정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일방적 인정

사.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 또는

아.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적합성 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촉진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제 2 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전에, 그리고 개별 적합성
평가결과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4.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 교섭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한다.

5.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제 6.7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나. 건강, 안전 및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의 규제 기관 간 협력 증진

다.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

라. 모범규제관행 이행에 따른 무역 촉진, 그리고

마.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에 기초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 강화

2. 제 1 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한다.

가.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한 모범규제관행의 증진

나. 각 당사국의 기술 규정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

다.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의 관리 및 기관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한 공동 계획 개발, 또는

라. 적절한 경우, 시장감시 정보의 교환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무역원활화 계획을 확인, 개발 및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투명성

나. 국제표준과의 정합

다. 기술 규정의 조화 또는 동등성

라. 상호인정협정 또는 상호인정약정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마. 준수 사안에 대하여 도달한 이해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확대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저압 장비 분야에 대하여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에서 개발된 표준과 같은 국제표준의 조화 및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제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중복된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그 국가 인증기관이 전기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 인증을 위한 기초로 서로의 국제전기기기 인증시험 증명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것, 그리고

나.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LAC)를 포함하여 지역적,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인정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에서의 협력 증진

제 6.8 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9 조, 제 2.10 조, 제 5.6 조 또는 제 5.7 조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거나 통보를 전달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 제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 및 그 사안을 다루는 방법을 포함시킨다.
2.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9 조 또는 제 5.6 조에 따라 통보를 전달한 후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 일을 부여한다.
3.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되게, 자국이 채택하려는 제안된 기술 규정 및 제안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한 새로운 기술 규정 또는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문서를 사전에 공표한다.
4. 각 당사국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각 당사국은 표준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권고한다.

6.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자국의 답변 또는 답변의 요약을, 자국이 최종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한 날보다 늦지 않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7.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표준,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6.9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나.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다.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보장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을 포함하여, 규제 당국, 인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의 검토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한 분야에서, 협정 교섭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바.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적,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20 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고,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의 신속한 촉진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제고하고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촉진하게 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그리고

차. 이 장에 따른 특정 과제를 수행할 작업반 설치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때에 회합한다.

4. 위원회는 다음의 접촉선이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경제산업부 무역청 또는 그 승계기관

5. 양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변경이나 관련 공무원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제 6.10 조 정보교환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된 형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 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제 6.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고
- 나. 지정이란 양 당사국 영역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점검, 지정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정지 해제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기관에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